

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경비 집행 인정기준 안내

<20.9.15,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>

‘신종 코로나바이러스’ 장기 지속에 따라 관련 경비의 집행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 발생으로 이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수행자 및 수행기관에게 감염병의 대처 및 예방과 관련된 경비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합니다.

□ (기존)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경비 인정기준 <직접비 기준>

- (대처) 감염병 대처를 위해 사업계획(연구계획)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(*)는 사업비(연구비)로 집행 가능
 - *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, 기 납부 학회등록비, 회의장 대관 및 행사 용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
- (예방) 사업(연구) 수행에 따른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(*)는 사업비(연구비)로 집행 가능
 - * 해당 사업(연구)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감염병 감염 예방물품(손세정제, 일회용 마스크 등) 구입 경비
 - ⇒ 단,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연구실안전 등을 위한 손소독제, 마스크 구입비용 등은 간접비(연구실안전관리비)로 집행해야 함

<참고 : 감염병 관련 추가 주요 질문>

- ③ (대응) 코로나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등으로 학회(행사), 회의, 인터뷰 등을 비대면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. 코로나 상황 전 연구계획 수립으로 인해 해당 경비가 연구계획서 상 계상되지 않았습니다. 웹캠, 헤드셋 등의 장비와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?

□ (추가)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경비 인정기준 <직접비 기준>

- (대응) 감염병 대처를 위해 연구계획 수행방식을 비대면(화상)으로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(*)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계획 변경의 타당성 검토·승인 후 연구비로 집행 가능
 - *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장비 중 화상회의에 필요한 범용성 장비(웹캠, 헤드셋 등) 및 소프트웨어,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료 등
 - ※ 단, 본 사항은 안내일자 이후부터 적용하되, 연구개발혁신법 시행(2021.1.1.) 후 별도 안내 시까지 유효

□ 기타

- 당초 계획에 계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 중 비대면 연구 수행과 무관한 범용성 장비 등은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음